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2차)계약서

본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2차)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1년 [12]월 [23]일(이하 “본 계약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하 “**을**”)

전 문

갑과 을은 2019년 2월 18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갑이 보유하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이하 “최초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9년 3월 7일 최초 위탁계약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변경계약서{이하 “1차 변경계약(서)”라 하고, 최초 위탁계약과 총칭하여 이하 “본건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갑과 을은 본건 위탁계약서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 1 조 (정 의)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이상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건 위탁계약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 2 조 (본건 위탁계약서의 변경)

- ① 본건 위탁계약서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건 위탁계약서 **별지 1. 수수료** 중 “2. 자산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갑은 갑의 제6기 및 제7기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로서 금 172,000,000원(이하 “최종 자산관리수수료”)을 2021년 [12]월 [30]일 을에게 지급한다. 명확히 하면, 최종 자산관리수수료는 갑이 제7기 사업연도 내에 청산하는 경우 추가 정산되지 아니한다.
- ② 본건 위탁계약서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건 위탁계약서 **별지 1. 수수료** 중 “4. 매각성과수수료”와 관련하여 갑은 부동산 거래완료일 후 을이 “매각성과수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20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단, “추가성과보수기준”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수수료는 잠정금액으로 부동산 거래완료일 후 을이 청구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차후 정산하기로 하며 초과매각차익에 관한 산출 방식은 원계약에 명시된 산출방식을 따르며 지급시기에 대해 추후 변경 시, 해당사항은 AMC에게 위임함.

제 3 조 (효력의 발생 등)

-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은 본건 위탁계약서와 단일한 문서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본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본 계약과 본건 위탁계약서 사이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음 기명날인 또는 서명 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여백)



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갑: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박 영 희



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표이사 이 창 희

